

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동작구 「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」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3. 20.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- 나. 명 칭: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48-2, 148-8, 190-50
- 나. 면 적: 5,365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의 명칭: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길 16-1, 2층

5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- 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
			변경전	변경후
-	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	본동 148-2, 148-8, 190-50	-	5,365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치	면적(㎡)	결정(변경)사유서
신설	-	본동 148-2, 148-8, 190-50	5,365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함

다. 지형도면

